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601호 2022년 1월 13일(목)

경 상 북 도

■ 규 칙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95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96호) 55
-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97호) 57

■ 고 시

- 성류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0호) 60
-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1호) 62
- 경북도청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설치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2호) 66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3호) 69

■ 공 고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79호) 74
- 계측업 신규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1호) 8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호) 83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2-27 외 4개 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2-7호) 134
-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2-5호) 142
- 경산도시계획시설(중로1-압9호선, 중로2-압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8호) 145
-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2-2호) 152
- 봉화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2-6호) 176

■ 공 고

-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46호) 184
- 도시계획시설(중로2-11)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50호) 187
-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차 제안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25호) 189

- 구미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안) 공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59호) 210
-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69호) 218
- 경산도시계획시설(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2-94호) 220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22년 1월 13일

경상북도 규칙 제2995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7 및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져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 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기능사 : 품질경영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 응용지질, 광해방지 기능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잡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산업기사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2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2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2급 정사서(6)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7]

조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테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역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 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 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 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운 전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작,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구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변용 적용: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관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 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설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화 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p>
	작 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농촌지도	농 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입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 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동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①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제)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군·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택 과 목		가. 나.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3.5cm×4.5cm)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 행 연 월 일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급 류)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임용예정직명: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작 성 요 령

-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 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1. 삭제
-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 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명	(한글)
					성명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22년 1월 13일

경상북도 규칙 제2996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와 시군” 을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 및 시군”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부지사” 를 “행정부지사” 로, “시군” 을 “도의회 및 시·군” 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을 각각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1회이상” 을 “1회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를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로 한다.

제10조 중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을 “도의회, 도와 시·군, 시·군 상호 간” 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장·군수” 를 “도의회 의장 및 시장·군수” 로 한다.

제14조 중 “시 장·군수” 를 “도의회 의장 및 시장·군수” 로 한다.

제15조 중 “시장·군수는 당해” 를 “도의회 의장 및 시장·군수는 해당”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22년 1월 13일

경상북도 규칙 제2997호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증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을 “임용권자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0호

성류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996-63호(1996.5.23.)로 지정된 성류온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명 칭 : 성류온천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4번지 일원
3. 해제면적 : 991,383m²

4. **해제사유** :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성류온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054-789-6381)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21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528.6ha(감 0.6ha)
 - 농업진흥구역 : 124,126.2ha(감0.6ha)
 - 농업보호구역 : 25,402.4ha(변동없음)

2. 농업진흥지역 증감 내역

(단위 : ha)

구분	시군	계			증 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경북도		149,528.6	124,126.2	25,402.4	감0.6
해제	군위군	5,022.6	4,286.4	736.2	감0.6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참고 2>> 별도 기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1》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2. 1. 13.기준

(단위 : ha)

시군	계		시군	계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528.6	124,126.2	25,402.4					
포항시	7,570.5	6,466.2	1,104.3	의성군	15,292.3	12,517.0	2,775.3	
경주시	10,264.9	8,426.0	1,838.8	청송군	3,872.8	2,955.5	917.3	
김천시	7,877.0	6,863.7	1,013.3	영양군	2,222.5	1,897.2	325.3	
안동시	7,335.8	6,338.8	997.0	영덕군	3,568.1	3,122.4	445.6	
구미시	8,074.2	7,306.2	768.0	청도군	6,119.3	4,374.9	1,744.4	
영주시	5,599.1	4,811.0	788.1	고령군	4,329.4	3,969.8	359.6	
영천시	10,264.9	7,110.5	3,154.3	성주군	7,191.5	6,005.1	1,186.4	
상주시	16,434.7	14,244.0	2,190.7	칠곡군	2,078.1	1,695.8	382.3	
문경시	6,128.2	5,014.7	1,113.5	예천군	9,785.8	8,571.9	1,214.0	
경산시	5,505.4	3,986.6	1,518.8	봉화군	3,155.1	2,661.9	493.2	
군위군	5,022.6	4,286.4	736.2	울진군	1,836.5	1,500.6	335.9	

《참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증감일 : 2022. 1. 13.

(단위 : ha)

시군	구분	위 치	사 유	증감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6	△0.6	-	-
군위군	해제	산성면 화본리 585-2번지 외 5필지	해당지역 여건변화 (3만㎡이하 농업진흥지역 단절)	△6	△0.6	-	-
		이 하	여 백				

경상북도 고시 제2022-22호

경북도청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의한 계획도시와 그 주변 사업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합리적, 경제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k㎡)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7번지 일원	35,283.9	25,000 (당초: 9,000, 증설: 16,000)	KIMAS+IPR 공법 (당초: KSMBR 공법)	8.003

다.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5.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마. 기타 관계서류는 안동시 상하수도과(054-840-576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115,004.9	35,283.9			
1	안동	풍천	도양	1427	잡	32,375.9	32,375.9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하수 처리장
2	예천	호명	금능	659-12	구	302	154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펌프장
3	"	"	"	286-1	답	32	4	"	"	"
4	"	"	"	285-3	전	502	37	"	"	"
5	"	"	"	산81-5	임	53,946	115	"	"	"
6	"	"	"	677-3	도	1,098	26	"	"	"
7	"	"	"	670-2	구	1,324	27	"	"	"
8	"	"	"	47-1	답	3,652	5	"	"	"
9	안동	풍천	도양	750	답	2,108	133	"	"	"
10	"	"	"	751	전	4,131	1,717	"	"	"
11	"	"	"	1352-5	구	420	157	"	"	"
12	"	"	"	647-1	도	5,550	131	"	"	"
13	"	"	"	751-1	전	196	168	"	"	"
14	"	"	"	518-11	답	601	16	"	"	"
15	"	"	"	1364-2	구	2,279	189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 농어촌 공사	"
16	"	"	"	1338-3	도	3,216	22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
17	"	"	"	518-10	답	3,272	7	"	"	"
					이	하	여	백		

경상북도 고시 제2022-23호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현대성우캐스팅(주) 포항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 내 현대성우캐스팅(주) 포항공장 부지조성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성 명 : 현대성우캐스팅(주) 포항공장 대표이사 김주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 내 현대성우캐스팅(주) 포항공장의 기타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필요한 공장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산220-1번지 일원
- 나. 면 적 : 22,532.2m²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기간)

- 가. 시행방법 (금회 삭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민간개발
- 나. 시행기간 : 기정 - 2011년 6월 2일 ~ 2021년 12월 31일
변경 - 2011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신규)**

- 공장용지내 사업시행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4,004,631.8	100.0	
공공용지	3,225,385.2	80.5	
조 성 부 지	2,322,242.2	57.9	현대성우캐스팅 : 22,532.2m ²
기타	903,143.0	22.6	
공공용지	360,033.1	9.0	
도로	302,622.9	7.6	
구거	57,410.2	1.4	
지원시설용지	59,716.3	1.5	
지원시설	59,716.3	1.5	
녹지	359,497.2	9.0	
녹지	231,544.0	5.8	
수도시설용지	127,953.2	3.2	

나. 금회신청부지

구 분	계	공장용지	내부도로용지	비 고
면 적(m ²)	22,532.2	21,977.2	555	
구성비(%)	100.0	97.5	2.5	

8. 위치도, 개발계획도, 시설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관계도서는 포항시 민자사업추진단(☎ 054-270-38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79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현재
‘취득일’에서 추정일과 일치하도록 ‘등록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2조)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
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500원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chosang8355@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 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으로, “2022년 6월 30일” 을 “2025년 6월 30일”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25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 을 “500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p>1. 2.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2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차 등 납부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차 등 납부에 따른 납부만을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p> <p>② (생 략)</p>	<p>----- ----- ----- ----- -----2025 년 6월 30일-----.</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p> <p>1. ----- ----- ----- 250원</p> <p>2. ----- ----- -- 500원</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2-81호

계측업 신규 등록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계측업을 신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경북 제2022-1호	플러스테라(주) (정태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8, 3층(상도동)	2022.01.10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서 등 신설 및 소방 현장부족인력 충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충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의2, 제43조, 제74조)
- 청송소방서 및 봉화소방서 신설(안 별표 2)
- 119특수대응단 신설(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총수 : 7,874명 → 8,007명(증 133명)
- 정원 변동내역
 -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 보강 : 15명
 - 소방관서 등 신설 및 현장부족인력 보강 : 118명

3)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의회 위원회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23, Fax : 054-880-2149, 이메일 : log0112@korea.kr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서명)</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의견제출서			
규칙명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서명)</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의견제출서

규 칙 명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의2, 제43조, 제74조)
- 청송소방서 및 봉화소방서 신설(안 별표 2)
- 119특수대응단 신설(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7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를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113조” 를 “제126조” 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각각 “법 제126조”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 을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법 제126조” 로 한다.

제3장제6절(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을 제7절(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같은 장에 제6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5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② 119특수대응단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7-1번지에 둔다.

제35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의4(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3. 특수사고 긴급구조 지휘 및 대응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119항공대 운영
6. 인명구조견 운영 및 관리
7. 기타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및 영 제75조” 를 “법 제126조 및 영 제17조” 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각각 “법 제127조” 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116조” 를 “법 제129조”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송소방서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6	청송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봉화소방서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617-7	봉화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p>
<p>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설치) ① ----- 제126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설치) ① <u>법 제113조</u>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25조(설치) ① <u>법 제126조</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설치) ① <u>법 제113조</u>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29조(설치) ① <u>법 제126조</u> 및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설치) ① <u>법 제113조</u>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32조(설치) ① <u>법 제126조</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6절 119특수대응단</p> <p>제35조의2(설치) ① <u>법 제126조</u>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p> <p>② 119특수대응단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7-1번지에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5조의4(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3. 특수사고 긴급구조 지휘 및 대응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119항공대 운영 6. 인명구조견 운영 및 관리 7. 기타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경북도립대학교</p> <p>제3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 이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경북도립대학교</p> <p>제3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영 제17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의2(설치) ① <u>법 제114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 략)</p>	<p>제38조의2(설치) ① <u>법 제127조</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설치) ① <u>법 제114조</u>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43조(설치) ① <u>법 제127조</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4조(설치) ① <u>법 제116조</u>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74조(설치) ① <u>법 제129조</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①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는 시,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 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

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
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
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교무과·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

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

3. 조교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3조(교장)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재난·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 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팀을 두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 팀장, 직할구조대장, 테러대응구조대장, 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 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비용 수반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 혁 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보강하고, 소방관서 신설 및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874명 → 8,007명(증133명)

- 집행기관 정원 : 2,250명(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정원 : 5,436명 → 5,554명 (+118)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23명 → 138명 (+15)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22명(변동없음)

나. 정원 변동내역

-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 보강 : 15명
 - 일반직 : 5급 이하 15명
-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 : 118명

- 소방직 : 소방정 2명, 소방령 이하 116명

다.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 공무원 : 3명(변동없음)
- 일반직 공무원 : 2,103명 → 2,118명(+15명)
 - 2급 : 1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2명(변동없음)
 - 3~4급 : 2명(변동없음)
 - 4급 : 97명(변동없음)
 - 5급 이하 : 1,975명 → 1,990명(+15명)
 - 전문경력관 : 14명(변동없음)
- 별정직 공무원 : 17명(변동없음)
- 연구직 공무원 : 242명(변동없음)
- 지도직 공무원 : 30명(변동없음)
- 소방직 공무원 : 5,436명 → 5,554명(+118명)
 - 소방정 : 25명 → 27명(+2명)
 - 소방령 이하 : 5,411명 → 5,527명(+116명)
- 교 원 : 43명(변동없음)

라.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10,861,736천원

- 일반직 86,074천원 × 15명 = 1,291,110천원
- 소방직 81,107천원 × 118명 = 9,570,626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74명”을 “8,0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를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대응단”으로, “5,436명”을 “5,5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23명”을 “13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8,007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118	-						
	2급	1				1			
	2~3급	2	1	1					
	3 급	12	9		1	2			
	3~4급	2	2						
	4급	97	63	9	5	9	9	1	1
	5급 이하	1,990	-						
	전문경력관	14	-						
별 정 직	소 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 구 직	소 계	242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8	-						
지 도 직	소 계	30	-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 방 직	소 계	5,554	-						
	소방정	27	5		22				
	소방령 이하	5,527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7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36명</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3명</p> <p>5.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8,007명"-----.</p> <p>1. (현행과 같음)</p> <p>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 대응단----- : 5,554명</p> <p>3. (현행과 같음)</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8명</p> <p>5.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항 (생 략)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3.~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⑤항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항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 및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등 국가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을 확충(안 제2조) 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1)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07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874	8,007	+133	
집행기관의 정원	2,250	2,250	0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 대응단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5,436	5,554	+118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 공무원의 정원	43	43	0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3	138	+1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	22	0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한다.

나. 일반직 및 소방직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2년 108억 61백만원을 비롯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58억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55,850,761	10,861,736	11,013,801	11,167,993	11,324,345	11,482,886
일반직	6,638,854	1,291,110	1,309,186	1,327,514	1,346,099	1,364,945
소방직	49,211,907	9,570,626	9,704,615	9,840,479	9,978,246	10,117,941

** 일반직 및 소방직 :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2022년도 보수인상을 1.4%를 적용하여 산정

4. 부대의견

2022년도 일반직 및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일반직 : 86,074천원, 소방직 : 81,107천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

율은 2022년도 보수인상을 1.4%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 혁 준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 상

- 정책지원관 및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 등 133명

나. 방 법

〈비용 추계 방법〉

▶ 일반직 및 소방직 공무원 :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 정원의 총수(개정안 제2조)

가.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고려사항 : 비용추계 범위에 대한 가정

-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매년 보수인상을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보수인상율은 2022년도 기준인 1.4%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실제 연도별 소요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공무원 1인당 기준인건비 : 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직	소 방 직	비 고
인 건 비	86,074	81,107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558억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 추정 : 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55,850,761	10,861,736	11,013,801	11,167,993	11,324,345	11,482,886
일반직	6,638,854	1,291,110	1,309,186	1,327,514	1,346,099	1,364,945
소방직	49,211,907	9,570,626	9,704,615	9,840,479	9,978,246	10,117,941

** 일반직 및 소방직 :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율 1.4%를 적용하여 산정

*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2022년도 일반직 및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2023 ~ 2026년도는 2022년도 보수인상율(1.4%)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 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의회 위원회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 를 “제102조 및 제103조” 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분석·조사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02조 및 제103조----- ----- ----- ----- ----- -----.</p>
<p><신 설></p>	<p>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분석·조사</p>

현 행	개 정 안
	<p>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제5조(직원의 정원) (생 략)	제6조(직원의 정원)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생 략)	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

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금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 혁 준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2 - 7호

경주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2-27 외 4개 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16-1번지 일원에 시행한 건천 천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27 외 4개노선)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3.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경주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33	천포리 대로3-1	천포리 중로2-2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변경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30	천포리 대로3-1	천포리 중로2-2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33	천포리 709-2	천포리 중로2-2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31	천포리 709-2	천포리 중로2-2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88	천포리 대로3-1	천포리 소로3-37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변경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88	천포리 대로3-1	천포리 소로3-37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07	천포리 628-1	천포리 소로3-28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96	천포리 628-1	천포리 소로3-28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15	천포리 중로2-2	천포리 소로2-26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변경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12	천포리 중로2-2	천포리 소로2-26	일반 도로		경고제337호 (77.10.12)	선형 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27호선	소로 2-27호선	• 소로2-27호선 선형변경 B = 8m L = 233m → 230m, 감)3m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2-28호선	소로 2-28호선	• 소로2-28호선 선형변경 B = 8m L = 133m → 131m, 감)2m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2-29호선	소로 2-29호선	• 소로2-29호선 선형변경 B = 8m L = 288m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3-27호선	소로 3-27호선	• 소로3-27호선 선형변경 B = 6m L = 107m → 96m, 감)11m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3-28호선	소로 3-28호선	• 소로3-28호선 선형변경 B = 6m L = 115m → 112m, 감)3m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3. 관계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423) 및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054-779-697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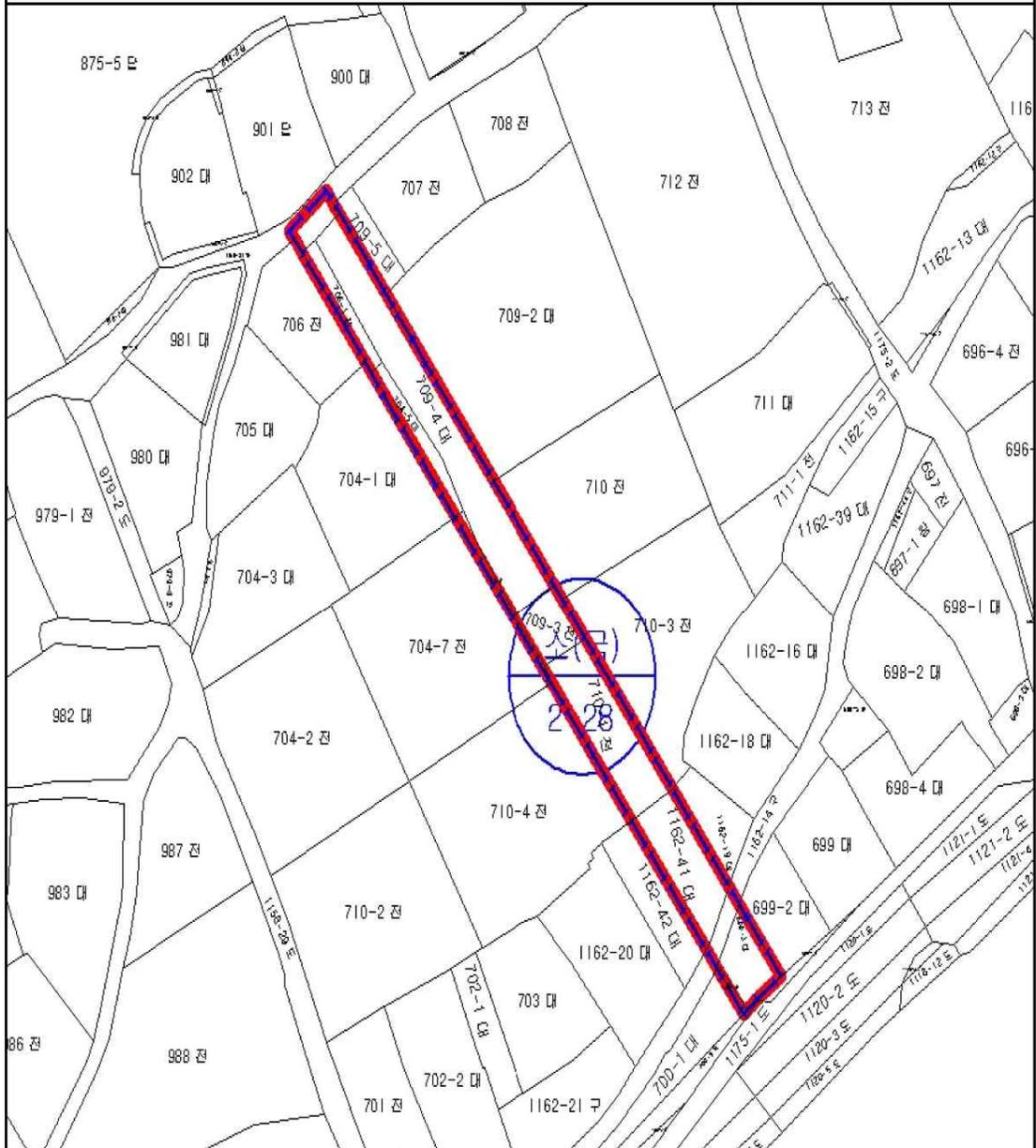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소로2-27호선 -



- ■ ■ ■ 도시계획시설 구역(기정)
- — — —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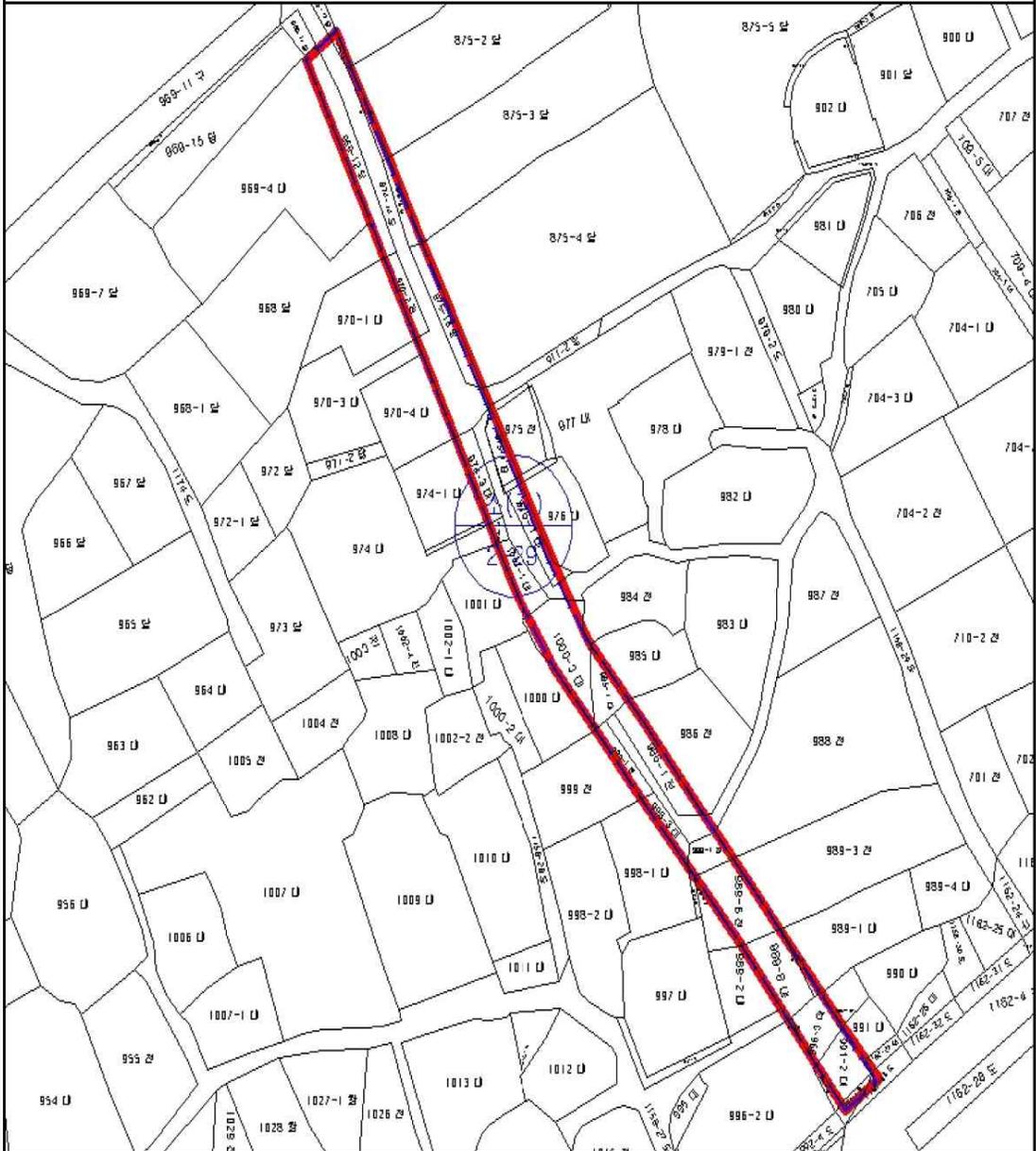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소로2-27호선 선형 변경
- B = 8m
- L = 233m → 230m, 감) 3m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소로2-28호선 -



	도시계획시설 구역(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 소로2-28호선 선형 변경
		B = 8m
		L = 133m → 131m, 감)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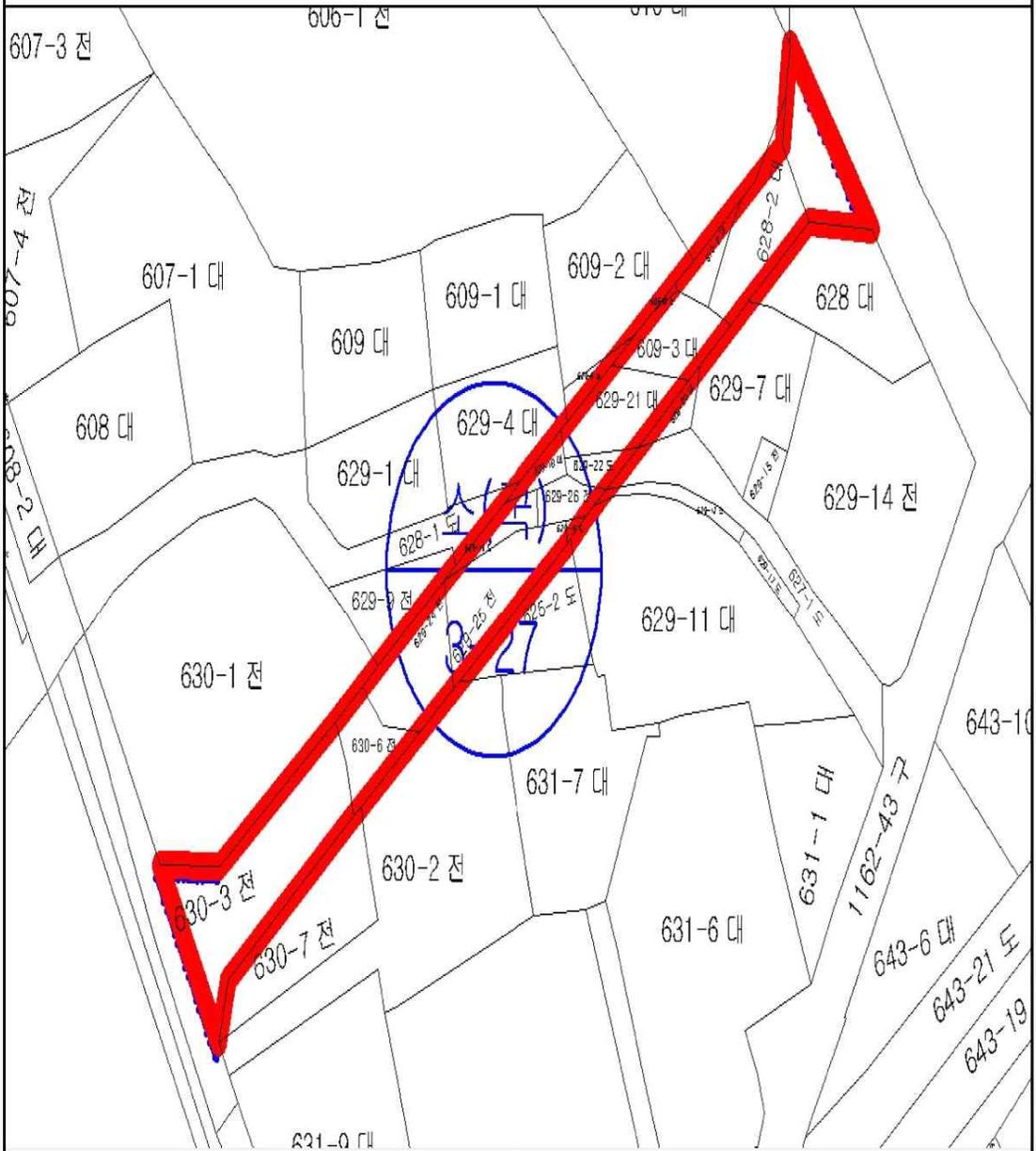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소로2-29호선 -



- ■ ■ ■ 도시계획시설 구역(기정)
- — — —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소로2-29호선 선형 변경
- B = 8m
- L = 28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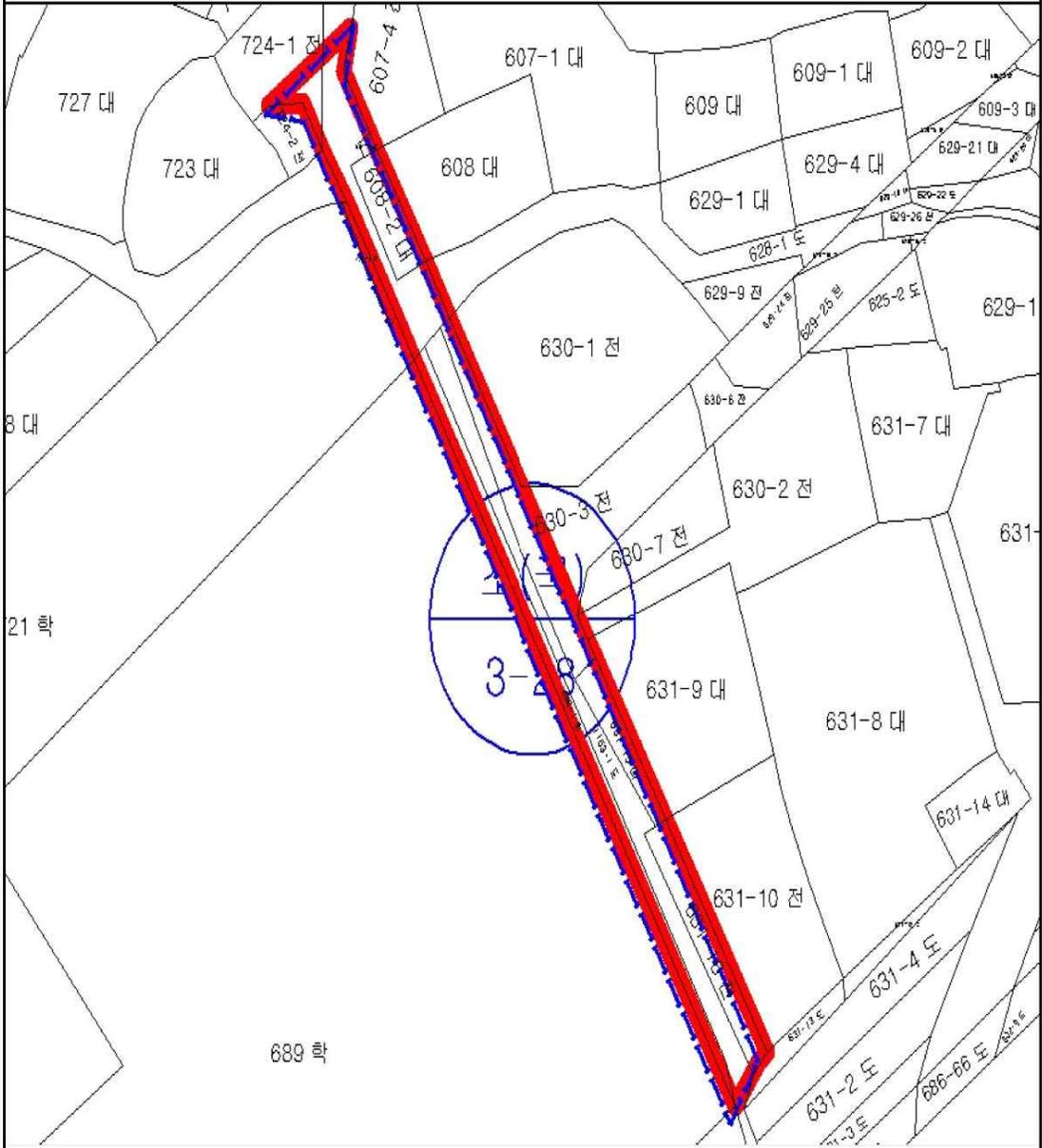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소로3-27호선 -



- 도시계획시설 구역(기정)
-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소로3-27호선 선형 변경
- B = 6m
- L = 107m → 96m, 감)11m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소로3-28호선 -



<p>--- 도시계획시설 구역(기정)</p>	<p>□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소로3-28호선 선형 변경</p>
<p>—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p>	<p>B = 6m L = 115m → 112m, 감)3m</p>

영천시 고시 제2022 - 5호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완산동, 망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 13.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1	26	20	보조 간선 도로	950	대로 1-2	대로 3-5	일반 도로	-	영고제26호 (2001.8.11.)	
	중 로	1	39	20	주간 선 도로	1,123	1호광장 완산동 935-3번지	중로1-26 완산동 523번지	일반 도로	-	경고제88호 (1976.5.26.)	
변 경	중 로	1	39	20	주간 선 도로	2,078	1호광장 완산동 935-3번지	대로 1-2 완산동 652-2번지	일반 도로	-		선형변경 및 노선합병
기 정	소 로	3	14 5	6	국지 도로	55	대로3-3호선 망정동 534-2번지	망정동 414번지	일반 도로	-	경고제132호 (1978.4.28.)	
변 경	소 로	1	74	10	국지 도로	55	대로3-3호선 망정동 534-2번지	망정동 414번지	일반 도로	-		노선명 변경 및 폭원확장
기 정	소 로	3	110	6	국지 도로	338	망정동 177번지	야사동 205-2번지	일반 도로	소로 3-112	경고제212호 (1974.9.23.)	
변 경	소 로	3	110	6	국지 도로	338	소로2-102 망정동 177-1번지	대로3-3 망정동 205-2번지	일반 도로	소로 3-112		선형변경
기 정	소 로	3	112	6	국지 도로	255	망정동 229-7번지	망정동 199-1번지	일반 도로	-	경고제212호 (1974.9.23.)	
변 경	소 로	3	112	6~8	국지 도로	256	중로1-2 망정동 229-16번지	중로1-4 망정동 199-22번지	일반 도로	-		선형변경 폭원확장

2) 교통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주차장	영천시 망정동 416번지	-	증 6,500	6,500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2 - 8호

경산도시계획시설(중로1-압9호선, 중로2-압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시설(중로1-압9호선, 중로2-압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신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로(중로1-압9호선, 중로2-압11호선)

3. 사업규모

- 중로1-압9호선 : L=307.0m, B=20m
- 중로2-압11호선 : L=49.0m, B=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실시계획인가 사유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변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7.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 1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 중로1-압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권리자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임량	부적	243	전	23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	"	180-15	장	150	150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김*호			중소기업은행 동일산업주식회사 동일철강주식회사
3	"	"	221	답	1,541	38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	"	701-83	도	930	18	국	국토교통부			
5	"	"	177-1	장	2,302	4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6	"	"	185-3	장	217	2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권리자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	압량	부적	185-1	전	481	4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8	"	"	185	장	2,411	24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9	"	"	180-14	장	542	542	경산시 압량읍 압동1로 15-10	주식회사 미광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10	"	"	180-9	장	1,044	1,044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180-1	주식회사 미광			주식회사 하나은행	
11	"	"	170-5	장	10,605	34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2	"	"	170-6	장	104	10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3	"	"	191-1	전	118	11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권리자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	압량	부적	191-3	장	115	1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5	"	"	191-4	장	24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6	"	"	198-5	장	68	6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7	"	"	198-4	진	602	6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호	서*호			
18	"	"	168-17	장	199	19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9	"	"	168-5	진	272	27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0	"	"	160-2	진	326	326	경산시 고산면 사월동	서*호	서*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권리자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1	암량	부적	160-3	전	87	8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2	"	"	159-6	창	375	375	경산시 암량읍 부적리 157	주식회사 대유			
합계					22,536	6,209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 중로2-압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권리자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임량	신대	237-5	장	1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로	양**규			
2	"	"	245-2	전	212	18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3	"	"	244	임	259	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	"	237-6	장	266	266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로	양**규			
5	"	"	193	장	1,775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6	"	"	194	대	370	2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7	"	"	363-11	도	1,143	72	국	국토교통부			
합계					4,026	783					

성주군 고시 제2022-2호

성주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908번지 일원의 성주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성 주 군 수

1.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57,924.7	-	957,924.7	100.0	
일반공업지역	957,924.7	-	957,924.7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성주읍 금산리 학산리 일원	957,924.7	-	957,924.7	경고2013-323호 (2013.7.22)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최종 승인시	금 회	최종 승인시	금 회	
합 계	957,924.7	957,924.7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56,982.3	656,982.3	68.6	68.6	
지 원 시 설 용 지	33,441.0	34,561.0	3.5	3.6	증 1,120.0m ²
물류시설	20,462.3	20,462.3	2.1	2.1	
기타지원시설	12,978.7	14,098.7	1.4	1.5	증 1,120.0m ²
주거용지	8,205.5	8,205.5	0.9	0.9	
공 공 시 설 용 지	259,295.9	258,175.9	27.0	26.9	감 1,120.0m ²
송전선로/철탑	776.5	776.5	0.1	0.1	
배수지	1,444.6	1,444.6	0.2	0.2	
유수지	18,789.3	18,789.3	1.9	1.9	
오수중계펌프장	1,086.7	1,086.7	0.1	0.1	
천연가스공급관리소	7,937.1	7,937.1	0.8	0.8	
하천	3,277.4	3,277.4	0.3	0.3	
공원	25,542.6	25,542.6	2.7	2.7	
녹지	66,156.0	66,156.0	6.9	6.9	
주차장	6,871.7	5,751.7	0.7	0.6	감 1,120.0m ²
도로	127,414.0	127,414.0	13.3	1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5	7,672	127,414	1	130	1,315	12	4,345	64,414	12	3,197	61,685
대로	3	2,644	58,326	-	-	-	-	-	-	3	2,644	58,326
중로	7	4,033	61,830	-	-	-	7	4,033	61,830	-	-	-
소로	15	995	7,258	1	130	1,315	5	312	2,584	9	553	3,359

주) : 면적은 가각을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5개 노선					7,672						
소계	3개 노선					2,644						
기정	대로	3	1	25	주간 선 도로	1,640	학산리 330	금산리 1271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 도로	538	학산리 432	금산리 457-3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	보조 간선 도로	466	학산리 432	금산리 산33-1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소계		7개 노선				4,033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748	학산리 373	학산리 419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01	학산리 426	학산리 759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230	학산리 429	학산리 산32-1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348	금산리 63	금산리 42-1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622	학산리 425	학산리 458-1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6	15	집산 도로	1,470	금산리 86-2	학산리 산38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414	학산리 751	학산리 산40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소계		1개 노선				1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0	금산리 716	금산리 714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소계		5개 노선				31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	금산리 85	금산리 85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8	금산리 산17	금산리 산18	일반 도로		경고 2012-246 (2012.8.13)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	학산리 455	학산리 455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44	금산리 716	금산리 714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0	학산리 산13-3	학산리 산13-3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소계		9개노선				553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1	학산리 554	학산리 729-5	일반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학산리 313-4	학산리 313-4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60	학산리 산32	학산리 산32	보행 자 전용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36	금산리 46	금산리 711	보행 자 전용 도로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10	학산리 산59-1	학산리 725-4	일반 도로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2	학산리 산40	학산리 494	일반 도로		경고 2014-329호 (2014.10.13)	
기정	소로	3	7	4	특수 도로	60	학산리 산32	학산리 산32	보행 자 전용 도로		경고 2014-329호 (2014.10.13)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0	학산리 371-1	학산리 371-1	일반 도로		경고 2017-224호 (2017.8.17)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5	학산리 371-1	학산리 371-1	일반 도로		경고 2017-224호 (2017.8.17)	

-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6,871.7	감 1,120	5,751.7		
변경	1	노외 주차장	학산리 908	5,784.6	감 1,120	4,664.6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2	노외 주차장	금산리 714 일원	1,087.1	-	1,087.1	경고 2013-323호 (2013.7.22)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변경) 내 용	결 정 (변경) 사 유
1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번 및 면적변경 · 위치 : 학산리 산32-1 일원 → 학산리 908 일원 · 면적 : A = 5,784.6m² → 4,664.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공부정리 된 지번 반영 · 주차장 일부 부지가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른 경계 및 면적 변경

(2)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66,156.0	-	66,156.0		
기정	1	구역 경계변 녹지	완충 녹지	금산리 600-3 일원	11,393.3	-	11,393.3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2	구역 경계변 녹지	완충 녹지	금산리 34 일원	11,859.5	-	11,859.5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3	구역 경계변 녹지	완충 녹지	학산리 493 일원	12,293.7	-	12,293.7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4	구역 경계변 녹지	완충 녹지	학산리 산15-3 일원	14,707.2	-	14,707.2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5	구역 경계변 녹지	완충 녹지	학산리 313-5 일원	8,657.6	-	8,657.6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6	배수지변 녹지	완충 녹지	학산리 907 일원	1,561.1	-	1,561.1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7	송전 선로변 녹지	완충 녹지	학산리 357 일원	5,683.6	-	5,683.6	경고 2014-329호 (2014.10.13)	

-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25,542.6	-	25,542.6		
기정	1	학산 체육 공원	체육 공원	학산리 755 일원	20,687.6	-	20,687.6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2	금산 소공원	소공원	금산리 713 일원	656.3	-	656.3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3	학산 소공원	소공원	학산리 313-5 일원	4,198.7	-	4,198.7	경고 2014-329호 (2014.10.13)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수도

■ 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444.6	-	1,444.6		
기정	1	배수지	학산리 산17 일원	1,444.6	-	1,444.6	경고 2012-246호 (2012.8.13)	

-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937.1	-	7,937.1		
기정	1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학산리 370일원	7,665.8	-	7,665.8	경고 2013-323호 (2013.7.22)	
기정	2	도시가스 계량시스템	학산리 371-1 일원	271.3	-	271.3	경고 2017-224호 (2017.8.17)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1개소	-	-	-	0.97	776.5		
기정	1	송전선로	금산리 산17	학산리 산59-1	성주2일반 산업단지	0.97	776.5	경고 2012-246호 (2012.8.13)	철탑 2개소

(4) 방재시설(변경없음)

-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1개소					0.20	2~20	3,277.4		
기정	1	예산 천	소하 천	금산리 591-2	금산리 1222-9	-	0.20	2~20	3,277.4	경고 2012-246호 (2012.8.13)	

-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8,789.3	-	18,789.3		
기정	1	유수 지	저류시 설	학산리 448 일원	14,288.0	-	14,288.0	경고 2012-246호 (2012.8.13)	
기정	2	유수 지	저류시 설	금산리 590 일원	4,501.3	-	4,501.3	경고 2013-323호 (2013.7.22)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086.7	-	1,086.7		
기정	1	오수중계 펌프장	학산리 454 일원	1,086.7	-	1,086.7	경고 2012-246호 (2012.8.13)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656,982.3	-	-	656,982.3	
산업	산업1	87,260.2	1	학산리 487 일원	66,109.1	분할 및 합병가능 (3,000m ² 이상 분할가능)
			2	학산리 산38-9 일원	10,575.7	
			3	학산리 산38-9 일원	10,575.4	
	산업2	12,944.9	1	학산리 산59-1 일원	12,944.9	
	산업3	17,551.6	1	학산리 731 일원	17,551.6	
	산업4	21,192.7	1	학산리 507-3 일원	10,598.3	
			2	학산리 493-1 일원	10,594.4	
	산업5	20,921.6	1	학산리 457-1 일원	20,921.6	
산업6	88,869.6	1	금산리 60 일원	59,998.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2	금산리 79 일원	11,999.5	
			3	금산리 83 일원	16,871.9	
산업7	85,107.1	1	학산리 421 일원	42,556.9		
		2	학산리 440 일원	42,550.2		
산업8	76,397.3	1	학산리 404 일원	33,220.6		
		2	학산리 397 일원	33,190.4		
		3	학산리 산27-1 일원	9,986.3		
산업9	72,847.9	1	학산리 411 일원	33,128.1		
		2	학산리 390 일원	14,893.6		
		3	학산리 360-2 일원	24,826.2		
산업10	34,122.5	1	금산리 산 23-3 일원	34,122.5		
산업11	65,633.0	1	금산리 51 일원	20,166.8		
		2	금산리 54 일원	16,319.1		
		3	금산리 46 일원	16,469.9		
		4	금산리 38 일원	12,677.2		
산업12	74,133.9	1	학산리 741 일원	11,557.0		
		2	학산리 743 일원	13,960.4		
		3	학산리 751 일원	12,523.1		
		4	학산리 748 일원	11,557.2		
		5	학산리 734-3 일원	24,536.2		

(2)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계		33,441.0	-	-	33,441.0				
변경	계		34,561.0	-		34,561.0				
기정	지원	지원1	20,462.3	1	학산리 365 일원	20,462.3	3,000m ² 이상 분할가능 ※물류시설			
		지원2	2,826.5	1	학산리 산32 일원	659.5	분할 및 합병 가능 ※기타 지원시설			
				2	학산리 산32 일원	632.7				
				3	학산리 산32 일원	767.2				
				4	학산리 산32 일원	767.1				
		지원3	2,099.1	1	학산리 산32 일원	699.7				
				2	학산리 산32 일원	699.7				
				3	학산리 산32 일원	699.7				
		지원4	2,942.7	1	학산리 425 일원	698.8				
				2	학산리 426 일원	1,463.5				
				3	학산리 429 일원	780.4				
		지원5	1,534.2	1	학산리 산32 일원	767.1				
				2	학산리 산32 일원	767.1				
		지원6	2,098.4	1	학산리 산32 일원	699.7				
				2	학산리 산32 일원	699.3				
				3	학산리 산32 일원	699.4				
		지원7	1,477.8	1	학산리 산32 일원	698.7				
				2	학산리 426 일원	799.1				
		신설	지원	지원 8	1,120.0	1		학산리 908	1,120.0	분할 및 합병 가능 ※기타 지원시설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8,205.5	-	-	8,205.5	
주거	주거1	1,188.0	1	금산리 717 일원	396.0	합병 허용, 분할 불가
			2	금산리 717 일원	396.0	
			3	금산리 717 일원	396.0	
	주거2	2,206.1	1	금산리 714 일원	441.1	
			2	금산리 444 일원	441.1	
			3	금산리 444 일원	441.3	
			4	금산리 444 일원	441.3	
			5	금산리 445 일원	441.3	
	주거3	1,238.7	1	금산리 714 일원	417.3	
			2	금산리 715 일원	417.4	
			3	금산리 715 일원	404.0	
	주거4	1,667.0	1	금산리 445 일원	454.3	
			2	금산리 713 일원	454.3	
			3	금산리 712 일원	438.4	
			4	금산리 712 일원	320.0	
	주거5	1,905.7	1	금산리 716 일원	460.0	
			2	금산리 711 일원	481.7	
			3	금산리 711 일원	482.0	
			4	금산리 41 일원	482.0	

(4) 기타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14,808.8	-	-	14,808.8	
변경	계		13,688.8			13,688.8	
기정	A1	A	7,665.8	1	학산리 370 일원	7,665.8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기정	A2	A	271.3	2	학산리 371-1 일원	271.3	도시가스 계량시스템
기정	B1	B	5,784.6	1	학산리 산32-1 일원	5,784.6	주차장1
변경	B1	B	4,664.6	1	학산리 908 일원	4,664.6	주차장1
기정	C1	C	1,087.1	2	금산리 714 일원	1,087.1	주차장2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12	산업1 ~ 산업12	용도	허 용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태	• 건축물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	

(2) 지원시설용지(변경)

- 물류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내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	

- 기타지원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지원2 ~ 지원4	지원2 ~ 지원4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변 건축한계선2m
기정	지원5 ~ 지원7	지원5 ~ 지원7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은 4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
신규	지원8	지원8	허용 용도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14.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단, 나목의 2)오피스텔은 제외)
				불허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

(3)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1 ~ 주거5	주거1 ~ 주거5	용도	허 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내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	

(4)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1 A2	용도	허 용 용 도	• 도시가스업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B1 C1	B1 C1	용도	허 용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간선도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내 차량출입불허 구간 계획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의함	

(2)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함	

(3) 대문, 담장의 형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문, 담장	• 대문,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1.2m 이하 권장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권장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성주군청 기업경제과(☎054-930-6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봉화군 고시 제2022 - 6호

봉화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0-44호(2020.05.11)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봉화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 1. 13.

봉 화 군 수

1. 봉화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변 호	폭원 (m)								
기정	중 로	3	12	12	집산 도로	162	내성리 대로3-1	내성리 산47-13	일반 도로	-	봉화군고시 제2020-44호 (2020.05.11)	
변경	중 로	3	12	12~ 27	집산 도로	162	내성리 대로3-1	내성리 산47-13	일반 도로	-	-	B=12m
기정	소 로	2	17	8	국지 도로	213	내성리 중3-6	내성리 산49-1	일반 도로	-	봉화군고시 제2020-44호 (2020.05.11)	
변경	소 로	2	17	8~ 46	국지 도로	213	내성리 중3-6	내성리 산49-1	일반 도로	-	-	B=8m

■ 결정(경미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2호선	중로3-12호선	• 면적 : 1,964㎡⇒ 2,945㎡ 증) 981㎡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도로 비탈면 편입으로 면적증가
소로2-17호선	소로2-17호선	• 면적 : 1,726㎡⇒ 4,865㎡ 증) 3,139㎡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산47-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봉화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전체면적: 38,877m²

- 공공청사(봉화경찰서) : A=28,200m²

- 공공공지 : 3,038m²

- 도로 : A=7,639m²(중로3-12호선, 소로2-17호선)

(중로3-12호선) B=12m~27m, L=162m

(소로2-17호선) B= 8m~46m, L=213m

* 편입행정구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일원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봉화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마.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2022년 1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조서 : 붙임

참조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도시교통과(☎054-679-6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합계				105,457	38,877						
1	봉화읍 내성리	152-5	전	982	596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최*숙				
2	봉화읍 내성리	152-8	전	628	628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최*숙				
3	봉화읍 내성리	152-9	전	1,131	1,131	봉화군 봉화읍 꽃동네길	최*숙				
4	봉화읍 내성리	152-10	전	145	145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홍*교				
5	봉화읍 내성리	170-6	임	159	12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7길	김*식				
6	봉화읍 내성리	170-7	임	83	13	대구광역시 서구	전*자				
7	봉화읍 내성리	170-8	임	186	10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강*희				
8	봉화읍 내성리	171-2	임	222	220		봉화군				
9	봉화읍 내성리	197-10	제	374	64		봉화군				
10	봉화읍 내성리	493	도	7,068	59		국				
11	봉화읍 내성리	500	구	9,716	499		국				
12	봉화읍 내성리	산47-11	임	6,851	6,629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정*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13	봉화읍 내성리	산47-12	임	7,504	7,091		봉화군				
14	봉화읍 내성리	산47-13	임	6,569	3,463		봉화군				
15	봉화읍 내성리	산47-1	임	6,588	5,957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정*원				
16	봉화읍 내성리	산49-1	임	27,074	7,531	봉화읍 포저리	홍*교				
17	봉화읍 내성리	산51-1	임	10,394	317	서울 성동구 중곡동	심*구				
18	봉화읍 내성리	산62	구	1,830	11		국				
19	봉화읍 내성리	152-3	전	1,051	454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안*현				
20	봉화읍 내성리	산47-14	임	5,842	3,170		봉화군				
21	봉화읍 내성리	산53-3	도	4,335	589		봉화군				
22	봉화읍 내성리	197-4	천	390	71		국				
23	봉화읍 내성리	172	전	850	179		봉화군				
24	봉화읍 내성리	174	전	3,983	35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최*환				
25	봉화읍 내성리	150-4	도	1,502	3		봉화군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봉화읍 내성리	산47-11	임	창고	블럭조스레트	16.4	m ²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정*원	
2	봉화읍 내성리	500	구	지붕	스레트	48.8	m ²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봉화**재 지**회	
3	봉화읍 내성리	산47-1	임	가옥	콘크리트조기와	72.6	m ²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정*복	
				창고	철골조스레트	8.7	m ²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2.3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담장	블록	10.0	m			
				대문	철재	2.1	m			
				수도	콘크리트	1	식			
4	봉화읍 내성리	171	대	담장	블록	13.0	m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계기독교 ****협회	
5	봉화읍 내성리	산47-1	임	창고	철근콘크리트	25.0	m ²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정*원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2-46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9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안동 정상택지2공원 재조성 사업

3. 사업의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전체 사업부지 면적 : 2,360.50㎡
- 금회 사업부지 면적 : 2,360.50㎡

구 분	총 면 적		시 행 면 적(금회)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2,360.50	100.00	2,360.50	100.00		
세 부 시 설	소 계	1,242.39	52.63	1,242.39	52.63	
	도로 및 광장	742.27	31.45	742.27	31.45	
	휴양시설	24.60	1.04	24.60	1.04	
	운동시설	3.95	0.17	3.95	0.17	
	유희시설	458.27	19.41	458.27	19.41	
	관리시설	13.30	0.56	13.30	0.56	
녹지 및 기타	1,118.11	47.37	1,118.11	47.37		

5. 시행기간 : 2021 1. 4. ~ 2022. 2. 28.

6. 공사 완료일 : 2021. 11. 8.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공원녹지과(☎054-840-540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안동시 공고 제 2022-50호

도시계획시설(중로2-11)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동시 용상동 1057-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로2-6호, 중로2-11호)사업
- 명 칭 : 용상중로(2-11) 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6,027m²(L=414.0m, B=15.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

5.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0. 06. 02.
- 준 공 일 : 2021. 12. 01.

구미시 공고 제2022 - 25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1에 따라 제3자 제안서를 접수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3.

구 미 시 장

1. 사 업 명 :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2. 대상공원

- 명 칭 : 구미 중앙공원
- 위 치 : 경북 구미시 광평동 산42번지 일원
- 토지현황 :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계	소 유 별			지 목 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임야	도로	전, 답	기타
266,534	124,839	129,414	12,281	208,273	36,717	4,928	16,616

3. 참가자격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제출한 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위 대상자 중 2개사(인) 이상 5개사(인) 이하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제안할 수 없음

4.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계량평가(70점)와 비계량평가(30점)로 구분 평가 후 합산하여 최다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계량평가는 구미시에서, 비계량평가는 구미시에서 구성한 20인 내외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5. 제안서 접수 방법

- 기 간 : 2022년 1월 13일 ~ 2022년 3월 14일 18:00까지(60일)
- 장 소 : 구미시 공원녹지과(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제안서(제출의향서,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 제안자 선임서 포함)
 - 컨소시엄의 경우 제안서는 대표 제안자의 대표가 접수
 - 접수자 신분증 및 인감 지참(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첨부)

6. 제안서 접수 관련 질의 방법

- 기 간 : 2022년 1월 13일 ~ 2022년 3월 7일 18:00까지
- 질의방법 : 서면질의(직접 방문 및 E-메일(pbh21@korea.kr)로 제출)
 - ※ E-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 연락(☎054-480-5562)
- 회신방법 : 질의서에 기재한 E-mail로 회신

7.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 제 안 자 : (주)서희건설(대표 박선기) 외 2개사
- 제안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면적 : 총면적 238,773㎡(공원 168,860㎡, 비공원 69,913㎡)
 - 총사업비 : 4,312억원(공원비 425, 보상비 254, 비공원비 3,633)
 - 제안내용
 - 공원시설 : 슬로우북센터, 주차장, 놀이시설, 조경시설, 산책로 등
 - 비공원시설 : 공동주택(1,140세대), 도시계획도로 등
 - ※ 최초제안자는 총평가점수의 5%를 가산하고 제안서 접수일까지 변경제안 가능
 - ※ 변경제안으로 공원사업비나 공원면적이 감소할 경우 총평가점수의 2.5% 가산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

- 진되며,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을 열람 후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 접수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붙임 제안서 평가(심사)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붙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산출근거 일체를 제안서에 첨부
 - 공원사업비는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일체의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변동, 비공원지역 사업 수익 감소 여부와 관계없는 고정비용에 해당함,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공원사업비의 변동이 가능하나, 공원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비공원시설의 규모가 축소(수익률에 대한 타당성 검증 후 적정 수익률 초과 시 적용)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제안자가 부담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미시에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공원은 2020년 6월 실시계획이 작성된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향후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시 사유지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토지조서 중 사유지(구미시와 공동 소유 토지 포함)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자의 책임임
 - 토지조서 상 국공유지 제외예정지는 다른 필지와 인접하지 않으면서 면적이 작거나 형상이 길고 폭이 좁아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판

단되는 토지로 총면적에서 제외

- 본 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며, 종료일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은 실효될 수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 참고)
- 제안서 평가 후 동점 발생 시 공원조성계획,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의 순으로 평가 배점이 높은 자로 결정한다.
 - ※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추첨 방법은 별도 공지
- 위조·변조 등 거짓서류를 제출할 시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협약서(안)에 대해 구미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우선 협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상자선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실시계획 등) 진행과정에서 수용된 제안서(사업계획)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구미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계(054-480-5562)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 1. 토지조서 1부.

2. 제안서 평가(심사)표 1부.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계		필지			266,534		
1	광평동	산36-1	도	3,548	1,101	구미시	제외 예정지
2	광평동	산37	임	12,879	12,879	구미시 외 1인	공유지 : 8,586m ² 사유지 : 4,293m ²
3	광평동	산37-1	도	842	470	구미시	
4	광평동	산37-2	도	2,390	929	구미시	
5	광평동	산38-4	도	1,234	30	구미시	
6	광평동	산41	임	31,237	31,237	국(산림청)	
7	광평동	산41-1	도	499	316	국(기획재정부)	
8	광평동	산42	임	8,331	8,331	구미시	
9	광평동	산50-2	임	25,494	341	성O여씨돈모재종중	
10	광평동	산50-6	임	1,047	170	구미시	
11	광평동	산50-10	임	344	167	구미시	제외 예정지
12	광평동	산56	임	61,928	56,791	국(산림청)	
13	광평동	산56-2	도	957	957	구미시	
14	광평동	산56-3	임	689	689	국(산림청)	
15	광평동	산57	임	31,670	278	김O분	
16	광평동	산57-1	도	1,147	1,147	구미시	
17	광평동	산57-3	도	200	200	구미시	
18	광평동	산57-4	도	100	100	구미시	
19	광평동	산58-1	도	62	62	구미시	
20	광평동	산60-5	임	3,367	3,367	구미시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21	광평동	산60-7	임	1,026	1,026	구미시	
22	광평동	산60-8	도	552	552	구미시	
23	광평동	산62-1	임	2,151	2,151	구미시	
24	광평동	산62-2	임	11,789	158	밀O박씨규정공과천 일소중회	
25	광평동	산62-13	임	3,081	3,081	구미시	
26	광평동	산62-16	임	75	75	구미시	
27	광평동	산70	구	672	672	국(농림수산부)	
28	광평동	산70-2	구	505	505	국(농림수산부)	
29	광평동	산71	구	684	684	국(농림수산부)	
30	광평동	산71-2	구	618	618	국(농림수산부)	
31	광평동	산72	구	6,014	1,241	국(농림수산부)	제외 예정지
32	광평동	산76	구	2,881	1,027	국(농림수산부)	
33	광평동	산81	구	90	63	국(건설교통부)	제외 예정지
34	광평동	산84	구	3,767	3,767	국(농림수산부)	
35	광평동	산85	도	2,348	2,348	국(건설부)	
36	광평동	산85-1	도	58	4	국(건설부)	
37	광평동	산87-1	도	127	30	국(농림수산부)	
38	광평동	산88	구	258	258	국(농림수산부)	
39	광평동	산89	구	467	467	국(농림수산부)	제외 예정지
40	광평동	산90	구	166	156	국(농림수산부)	제외 예정지
41	광평동	산91-1	도	212	5	국	제외 예정지
42	광평동	산91-2	도	415	405	국	제외 예정지
43	광평동	253	전	34	34	구미시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44	광평동	257	전	263	263	구미시	
45	광평동	258	전	98	98	구미시	
46	광평동	259	답	83	83	구미시	
47	광평동	261	전	80	80	구미시	
48	광평동	337-1	대	119	18	구미시	제외 예정지
49	광평동	342-1	답	286	64	구미시	제외 예정지
50	광평동	347-3	답	66	1	구미시	제외 예정지
51	광평동	352-3	답	320	82	구미시	제외 예정지
52	광평동	352-4	답	52	52	구미시	제외 예정지
53	광평동	353-4	전	144	73	구미시	제외 예정지
54	광평동	440-1	도	740	23	구미시	
55	광평동	440-2	답	87	87	구미시	
56	광평동	829-8	도	209	17	국(농림축산식품부)	
57	광평동	829-9	구	53	53	국(농림축산식품부)	
58	광평동	856-21	구	1,330	182	국(농림축산식품부)	제외 예정지
59	광평동	856-23	구	10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제외 예정지
60	광평동	856-27	구	79	1	국(농림축산식품부)	제외 예정지
61	광평동	866	도	299	221	국(건설부)	제외 예정지
62	사곡동	산11-1	도	1,123	242	구미시	
63	사곡동	산11-2	도	4,758	1,752	구미시	
64	사곡동	산12	임	15,566	15,566	국(산림청)	
65	사곡동	산12-1	도	12,825	6,616	구미시	
66	사곡동	산13-1	도	318	300	구미시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67	사곡동	산14	임	15,464	15,464	구미시	
68	사곡동	산14-1	도	1,594	1,196	구미시	
69	사곡동	산15	임	8,052	539	주O훈 외 1인	
70	사곡동	산15-3	도	287	219	구미시	
71	사곡동	산15-4	도	151	102	구미시	
72	사곡동	산16	임	6,130	6,130	박O우 외 3인	
73	사곡동	산16-1	도	770	770	구미시 외 1인	공유지 : 671m ² 사유지 : 99m ²
74	사곡동	산16-3	도	3,502	1,930	구미시	
75	사곡동	산16-4	도	77	77	구미시	
76	사곡동	산16-5	임	2,052	2,052	구미시	
77	사곡동	산16-6	임	1,209	255	김O관 외 2인	
78	사곡동	산17-1	도	348	348	구미시	
79	사곡동	산17-2	도	3,413	1,984	구미시	
80	사곡동	산17-3	임	51	51	구미시	
81	사곡동	산40	도	368	368	경상북도교육감	
82	사곡동	산41	도	1,470	385	국(건설교통부)	
83	사곡동	385-1	도	9,703	292	구미시	
84	사곡동	392-1	도	354	164	구미시	
85	사곡동	400	도	195	2	구미시	
86	사곡동	626	도	127	127	국(건설부)	
87	사곡동	626-1	도	409	68	국(건설부)	
88	사곡동	628	도	92	92	국(건설부)	
89	사곡동	628-1	도	27	18	국(건설부)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90	송정동	산23	임	6,685	6,685	구미시	
91	송정동	산23-3	임	3,371	3,371	구미시	
92	송정동	산24	임	131	131	구미시	
93	송정동	산25	임	30,116	30,116	구미시	
94	송정동	산25-2	임	1,549	1,549	구미시	
95	송정동	산28	임	460	460	구미시	
96	송정동	산28-2	임	507	507	구미시	
97	송정동	산29-15	임	3,496	3,496	구미시	
98	송정동	산29-16	임	872	872	구미시	
99	송정동	산29-17	임	100	100	구미시	
100	송정동	산31	구	957	957	국(건설교통부)	
101	송정동	산31-2	구	286	286	국(건설교통부)	
102	송정동	389-3	공	78	78	구미시	
103	송정동	424-15	천	53	53	국(기획재정부)	
104	송정동	424-22	천	1,280	1,280	국(기획재정부)	
105	송정동	424-28	천	186	186	국(기획재정부)	
106	송정동	424-29	천	16	16	국(기획재정부)	
107	송정동	511	도	9,575.2	196	구미시	제외 예정지
108	형곡동	산4	임	85,647	188	선O김씨원당파종중	
109	형곡동	산4-4	도	3,838	3,838	구미시	
110	형곡동	산4-5	도	11,715	5,719	구미시	
111	형곡동	산126	구	293	293	국(농림수산부)	제외 예정지
112	형곡동	산127	구	837	837	국(농림수산부)	

연번	위치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113	형곡동	436	전	84	84	구미시	제외 예정지
114	형곡동	436-2	전	28	28	구미시	제외 예정지
115	형곡동	437-3	전	886	886	구미시	제외 예정지
116	형곡동	450-1	전	70	70	구미시	제외 예정지
117	형곡동	450-2	전	60	60	구미시	제외 예정지
118	형곡동	456	전	1,606	1,606	구미시	
119	형곡동	456-1	전	591	591	구미시	
120	형곡동	457-1	도	4,280	995	구미시	
121	형곡동	462-1	답	79	79	구미시	
122	형곡동	463-3	전	12	12	구미시	
123	형곡동	464-1	전	8	8	구미시	
124	형곡동	464-2	전	286	286	구미시	
125	형곡동	465	전	8	8	구미시	
126	형곡동	465-1	전	293	293	구미시	
127	형곡동	812	구	2,364	2,364	국(농림축산식품부)	
128	형곡동	812-3	구	247	247	국(농림축산식품부)	
129	형곡동	812-5	구	189	189	국(농림축산식품부)	제외 예정지
130	형곡동	816	구	75	75	국(기획재정부)	제외 예정지

제안서 평가(심사)표

제안서 평가(심사)표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비고
1	재무구조, 경영상태	5	○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5점 부여)	계량평가	주1-1)
		5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주1-2)
2	사업시행의 안정성	10	○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도(국토계획법제 86조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0점 부여)	"	주2)
3	사업·조직·관리기술	10	○ 최근 5년간 공원시설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비공원시설 사업실적	"	주3)
		5	○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 ○ 참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5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주4)
4	비공원시설의 규모	10	○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	주5)
5	공원조성 계획	20	○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	"	주6)
		10	○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비계량평가	주7)
6	사업시행 계획	20	○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계획의 현실성, 구체성, 신뢰성 및 타당성	"	주8)
합 계		100			
가 점		5%	○ 최초제안자 가점		주9)

※ 공동 제안인 경우 대표 제안자만 평가함. 단, 공동 제안자간 참여비율(출자금액)이 다른 경우 참여 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대표 제안자로 함.

참고

- 본 평가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을 기반으로 작성함
- 계량평가(70점)은 구미시에서, 비계량평가(30점)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함.

주1-1) '재무구조·경영상태' 계량평가(5)

구 분	배 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2.5)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2.5	2.0	1.5	1.0	0.5
○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2.5)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2.5	2.0	1.5	1.0	0.5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자기자본·유동비율이 높은 제안자로 함

예)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각각 A사 0.8, 0.4, B사 0.6, 0.5인 경우 배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A사 2.5점(0.8/0.8*100=100%), B사 1.0점(0.6/0.8*100=75%)

- 최근년도 유동비율 : A사 1.5점(0.4/0.5*100=80%), B사 2.5점(0.5/0.5*100=100%)

주1-2) 경영상태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A+ 미만, A0 이상	A2+ 미만, A20 이상	A+ 미만, A0 이상	4.5
A0 미만, A- 이상	A20 미만, A2- 이상	A0 미만, A- 이상	4.0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5
BBB+ 미만, BBB- 이상	A3+ 미만, A3- 이상	BBB+ 미만, BBB- 이상	3

* 위 3종류의 신용평가 자료 중 1종류만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주2) '사업시행의 안정성' 계량평가(10)

구 분	배 점					
	○ 소유면적 비율 (토지면적/총면적)	(5)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5			4	3	2	1
○ 소유금액 비율 (토지금액/총토지비용)	(5)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5	4	3	2	1

* 소유면적 및 금액은 제안서 접수일 기준

*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인 경우 10점 부여

* 토지면적은 대표제안자가 소유한 면적이며, 총면적은 사유지 합계 면적임

* 토지금액은 대표제안자가 소유한 토지의 가격이며, 총토지비용은 총면적의 토지의 가격임

* 소유토지는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압류·지상권·가등기·가처분 등의 설정이 없는 토지로서 제안자가 매매 등을 함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 토지일 것

* 토지금액 : 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인접한 토지 중 가장 많이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반영

주3) '사업실적 및 참여 전문인력' 계량평가(20)

- 사업실적(10)

구 분	배 점					
	○ 동일한 사업실적	(5)	1천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			4.5	4	3.5	3
○ 유사한 사업실적	(5)	1천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4.5	4	3.5	3

* 제안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한 사업 실적

* '유사한 사업실적'이란 공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에서 발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원) 및 제안한 비공원시설(주택건설 등)사업 실적, '동일한 사업실적'이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을 의미함

-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2.5)

구 분	10인이상	6인이상	3인이상	3인미만
배 점	2.5	2.0	1.5	1

*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 인력의 수

* * 건축, 토목, 조경, 도시, 교통, 환경 관련 전문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격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의 등급을 갖춘 자

- 참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2.5)

구 분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2.5	2.0	1.5	1	0.5

*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 인력의 평균 경력(재직증명서와 경력확인서 제출)

주4)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계량평가(5)

- 징계회수 : 0회(5), 1회(3), 2회(1), 3회 이상(0)

징계회수	0회	1회	2회	3회이상
배 점	5	3	1	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횟수로 평가

주5) '비공원시설의 규모' 계량평가(10)

-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10)

구 분	배 점					
○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비공원시설 건폐율/기준비율	(5)	70% 미만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100% 이상
		5.0	4.5	4.0	3.5	3.0

구 분	배 점					
	○ 비공원시설의 용적률 비공원시설 용적률/기준비율	(5)	70% 미만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			4.5	4.0	3.5	3.0

* 여러 개의 사업 제안서 평가 시 비공원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보정값을 적용함

- 보정건폐율 = 해당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건축면적 / 다수의 제안서 중 최대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보정용적률 = 해당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연면적 / 다수의 제안서 중 최대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준비율은 비공원시설의 보정건폐율·용적률이 높은 제안자로 함

예) 비공원시설 건축면적, 연면적 및 부지면적이 각각 A사 50, 300, 100㎡

B사 80, 500, 200㎡인 경우

- 건폐율 : A사 50%(50/100), B사 40%(80/200) ⇒ 보정건폐율 : A사 25%(50/200), B사 40%(80/200)

- 용적률 : A사 300%(300/100), B사 250%(500/200)

⇒ 보정용적률 : A사 150%(300/200), B사 250%(80/200)

- 배 점 : A사 건폐율 5점(25/40*100=62.5%), 용적률 5점(150/250*100=60%)

B사 건폐율 3점(40/40*100=100%), 용적률 3점(250/250=100%)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20)

-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20)

구 분	배 점				
	○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설치비용/기준비용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10		8	6	4	2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설치면적/총면적)/기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0	8	6	4	2

* 기준비용은 설치비용이 높은 제안자로 함

* 설치비용은 공원시설 설치비용임(보상비, 비공원시설 비용 제외)

단, 제안한 설치비용은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공원시설비용임

* 설치면적은 공원시설면적이며, 총면적은 공원시설면적과 비공원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임

* 기준비율은 면적비율(설치면적/총면적)이 높은 제안자로 함

주7) '공원조성계획' 비계량평가(1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수	우	미	양	가	
공원 조성 계획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2)	① 사업 취지와 의 부합여부	(1)	1	0.95	0.9	0.85	0.8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1)	1	0.95	0.9	0.85	0.8
	계획방향의 적절성 (5)	③ 비공원시설과 주변 용도지역과의 조화	(1)	1	0.95	0.9	0.85	0.8
		④ 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1)	1	0.95	0.9	0.85	0.8
		⑤ 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	(1)	1	0.95	0.9	0.85	0.8
		⑥ 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	(1)	1	0.95	0.9	0.85	0.8
		⑦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1)	1	0.95	0.9	0.85	0.8
	계획의 충실성 (2)	⑧ 사업지역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1)	1	0.95	0.9	0.85	0.8
		⑨ 계획서 및 관련현황자료의 정확성·사실성(자료의 출처 명시 여부, 최신자료 이용 여부)	(1)	1	0.95	0.9	0.85	0.8
	기대효과 (1)	⑩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의 적정성	(1)	1	0.95	0.9	0.85	0.8
합 계		10						

세부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평가점수 :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 ※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정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평가 기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여러 개의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입찰업체수별 평가등급 상대평가 기준

*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유의사항

- ① 상대평가 시 실적 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 평가 시 입찰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과 관계없이 “가” 등급으로 평가
- ② 상대평가 시 2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
- ③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 후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산정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단 최고, 최저 점수가 2인 이상 동점일 경우 1인만 제외
- ④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배분

○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 평가점수 배분: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1.00	0.95	0.90	0.85	0.80

주8) '사업시행계획' 비계량평가(20)

- '사업시행계획' 비계량평가 세부평가표(2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수	우	미	양	가
사업시행 계획 (25)	재원조달 계획 (6)	① 사업비 조달계획 및 이행방안	(2)	2	1.9	1.8	1.7	1.6
		② 자기자본 조달계획의 현실성	(2)	2	1.9	1.8	1.7	1.6
		③ 타인자본 조달계획의 현실성	(2)	2	1.9	1.8	1.7	1.6
	계획의 현실성 (6)	④ 공원조성 비용의 현실성 (공사비, 부대비, 설계비, 측량비, 감리비 등)	(3)	3	2.85	2.7	2.55	2.4
		⑤ 토지매수 비용의 현실성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토지소유여부 등)	(3)	3	2.85	2.7	2.55	2.4
	계획의 구체성 (6)	⑥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일정, 운영계획 등)	(3)	3	2.85	2.7	2.55	2.4
		⑦ 기부채납 계획의 구체성	(3)	3	2.85	2.7	2.55	2.4
	계획의 신뢰성 및 타당성 (2)	⑧ 사업비 산정 및 사업수지분석의 타당성	(1)	1	0.95	0.9	0.85	0.8
		⑨ 내용항목의 누락여부	(1)	1	0.95	0.9	0.85	0.8
합 계			20					

세부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평가점수 :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 ※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정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평가 기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여러 개의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입찰업체수별 평가등급 상대평가 기준

*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유의사항

- ① 상대평가 시 실적 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 평가 시 입찰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과 관계없이 “가” 등급으로 평가
- ② 상대평가 시 2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
- ③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산정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단 최고, 최저 점수가 2인 이상 동점일 경우 1인만 제외

- ④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배분

○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 평가점수 배분: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1.00	0.95	0.90	0.85	0.80

주9) 최초제안자 가점

- *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의 5% 가점 부여
- *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 공고 기준에 맞게 1회에 한하여 변경 제안 할 수 있으며, 변경 제안시 가점을 2.5%만 부여
- * 대표제안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구미시 공고 제2022-59호

구미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안) 공람공고

구미시 진평동 62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13.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구미시 진평동 62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조성사업
- 명칭 : 인동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유수지 : 20호)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유수지 결정면적 : 1,949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명 : 구미시장(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5. 사업수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년 12월 31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고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7. 공고기간 : 2022년 1월 13일 ~ 2022년 2월 7일****8. 기타 관련 서류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4-480-4532)에 비치하
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089	1,949					
1	진평동	0-1	가	50	50	-	-			
2	진평동	621-2	구	142	31	한 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진평동	622-2	대	228	50	김*암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2-8			
						대한*** ***** *교회	경북 구미시 인동2길 12(진평동 632-1)			
						김*정	경북 구미시 구평동 진평구획1블럭 대우아파트 107동 403호			
						박*호	경북 구미시 홍안로 46, 108동 1101호 (옥계동, 에덴타운)			
						박*복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40, 205동 302호 (미광한누리타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박*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879-7, 307동 901호 (굴화주공 강변그린빌3단지)			
						박*호	경북 구미시 진평2길 54-11(진평동)			
						김*구	경북 구미시 인동35길 33, 107동 502호 (인의동 구미 인의푸르지오)			
						김*수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70-3			
4	진평동	623-3	대	399	399	대한*** ***** *교회	경북도 구미시 진평동 623-1			
5	진평동	626	답	223	202	박*균	경북 구미시 옥계동 383-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화원지점)	근저당
6	진평동	626-1	답	374	306	구미시				
7	진평동	626-24	답	27	27	구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진평동	628-2	도	1,802	221	구미시				
9	진평동	628-4	구	66	61	한 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진평동	628-5	답	43	43	이*란	경북 구미시 봉곡동 527 영남네오빌시티 102-205			
						도*혁	경북 구미시 사곡동 681-5 정안빌딩 301호			
11	진평동	629-2	도	10	10	구미시				
12	진평동	632-8	대	99	99	김*용	경북 구미시 인동중앙로 7길 28, 302호 (황상동,드림뷰)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형곡동지점)	근저당
			건축물			김*진	경북 구미시 형곡동 376, 삼우아파트 912-202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형곡동지점)	근저당
13	진평동	632-9	대	73	73	김*진	경북 구미시 인의동 273-1			
14	진평동	632-10	잡	740	130	김*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57번길 19(서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정	경북 구미시 구평동 진평구획1블럭 대우아파트 107동 403호			
						박*호	경북 구미시 진평2길 54-11(진평동)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여신관리부)	가압류
						박*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879-7, 307동 901호 (굴화주공 강변그린빌3단지)			
						박*호	경북 구미시 홍안로 46, 108동 1101호 (옥계동, 에덴타운)			
						박*복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40, 205동 302호 (미광한누리타운)			
						김*구	경북 구미시 인동35길 33, 107동 502호 (인의동 구미 인의푸르지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수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70-3			
						이*복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28길 11, 106동 1301호 (사곡동,보성황신 타운2차)			
						최*락	경북 구미시 여현로6길 17(인의동)			
						한*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57번길 19(서현동)	인동농업 협동조합	구미시 진평동 (서부지소)	근저당
						대한*** ***** *교회	경북 구미시 인동2길 12(진평동)			
						김*진	경북 구미시 인동중앙로 7길 28, 302호 (황상동, 드림뷰)			
15	진평동	632- 11	대	43	3	대한*** ***** *교회	경북 구미시 인동2길 12(진평동)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진평동	996-23	도	2,145	85	국 (건설교 통부)				
17	진평동	1001-20	구	452	152	구미시				
18	진평동	1018	구	173	7	국(농림 축산식 품부)				

구미시 공고 제 2022 - 69호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3.

구 미 시 장

1. 등록연월일 : 2022. 1. 13.

2. 등록 및 폐기사유 : 「구미시 공인 조례」 제4조에 의거,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조

3. 공인명(인영)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구미시장의인		구미시장인	

경산시 공고 제2022 - 94호

경산도시계획시설(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증방동 78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사업(근린공원)

- 명 칭 : 남매근린공원

3. 사업규모

- 공원
 - 시설결정면적 : 586,717㎡
 - 사업시행면적 : 당초 - 87,668㎡
 변경 - 87,558㎡ (감 110㎡)

4.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공원녹지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2. 1. 13. ~ 2022. 1. 27.(도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 공원녹지과(☎810-61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합	계			116,337	87,668					
변경		합	계			114,059	87,558					
기정	1	경산시 삼북동	2	도		7,226	2	경산시				
변경	1	경산시 삼북동	2	도		7,202	2	경산시				
기정	2	경산시 삼북동	4	전		1,026	1,026	경산시				
변경	2	경산시 삼북동	4	전		800	800	경산시				
기정	3	경산시 삼북동	6	전		1,854	1,854	경산시				
기정	4	경산시 삼북동	8	전		238	238	경산시				
기정	5	경산시 삼북동	9	전		390	390	이*호	경북 상주시 만산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6	경산시 삼북동	10	임	721	721	경산시					
기정	7	경산시 삼북동	103-1	답	26	26	태*철	경북 경산시 삼북동				
기정	8	경산시 삼북동	104-1	답	175	175	경산시					
기정	9	경산시 삼북동	1-1	전	166	166	경산시					
기정	10	경산시 삼북동	110-10	답	14	14	경산시					
기정	11	경산시 삼북동	11-1	전	281	281	경산시					
기정	12	경산시 삼북동	11-2	전	1,186	1,186	김*수	경북 경산시 경안로				
기정	13	경산시 삼북동	11-3	전	97	43	경산시					
변경	13	경산시 삼북동	11-3	전	13	13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4	경산시 삼북동	1-2	전	385	384	경산시					
변경	14	경산시 삼북동	1-2	전	88	88	경산시					
기정	15	경산시 삼북동	12-1	전	674	674	경산시					
변경	15	경산시 삼북동	12-1	전	544	544	경산시					
기정	16	경산시 삼북동	12-3	임	2,807	2,807	경산시					
변경	16	경산시 삼북동	12-3	임	2,395	2,395	경산시					
기정	17	경산시 삼북동	12-5	구	285	285	경산시					
변경	17	경산시 삼북동	12-5	구	272	272	경산시					
기정	18	경산시 삼북동	12-6	임	200	200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18	경산시 삼북동	12-6	임	190	190	경산시					
기정	19	경산시 삼북동	13-2	전	669	669	경산시					
							한*분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변경	19	경산시 삼북동	13-2	전	221	221	경산시					
							한*분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기정	20	경산시 삼북동	20-1	답	101	101	경산시					
변경	20	경산시 삼북동	20-1	답	62	62	경산시					
기정	21	경산시 삼북동	21-2	답	800	800	진*순	경북 경산시 장산로				
							이*화	경북 경산시 장산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22	경산시 삼북동	21-9	답	10	10	이*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기정	23	경산시 삼북동	22-3	답	56	56	이*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기정	24	경산시 삼북동	5-1	묘	608	608	경산시					
변경	24	경산시 삼북동	5-1	묘	587	587	경산시					
기정	25	경산시 삼북동	5-2	전	767	767	경산시					
변경	25	경산시 삼북동	5-2	전	694	694	경산시					
기정	26	경산시 삼북동	7-1	전	546	546	경산시					
기정	27	경산시 삼북동	7-2	묘	701	701	신*명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기정	28	경산시 삼북동	7-3	묘	182	182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29	경산시 증방동	741	전	1,111	1,076	이*수	경북 영천시 화룡동				
변경	29	경산시 증방동	741-1	전	1,077	1,077	이*수	경북 영천시 화룡동				
기정	30	경산시 증방동	742	전	1,755	1,535	달성*씨 증방학계회	경북 경산시 증방동				
변경	30	경산시 증방동	742-1	전	1,528	1,528	달성*씨 증방학계회	경북 경산시 증방동				
기정	31	경산시 증방동	744	도	16,976	141	경산시					
변경	31	경산시 증방동	744	도	16,949	141	경산시					
기정	32	경산시 증방동	754	전	247	247	달성*씨 현감공파 동고공문중	경북 경산군 경산읍 증방동				
기정	33	경산시 증방동	755	전	850	850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면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34	경산시 증방동	756	전	893	893	유*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기정	35	경산시 증방동	757	전	932	932	경산시					
기정	36	경산시 증방동	760	중	8,388	8,388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37	경산시 증방동	762	전	5	5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38	경산시 증방동	763	전	150	150	문*곤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기정	39	경산시 증방동	764	전	800	800	김*순	경북 경산시 증방동				
기정	40	경산시 증방동	765	전	770	770	유*선	경북 경산시 증방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41	경산시 증방동	766	전	178	178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42	경산시 증방동	774	전	1,193	1,193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43	경산시 증방동	776	수	992	992	경산시					
기정	44	경산시 증방동	781	수	463	463	국(기획 재정부)					
기정	45	경산시 증방동	789	전	116	116	경산시					
기정	46	경산시 증방동	794	전	2,321	2,321	김*근	경북 경산군 경산읍 증방동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지상권자	
							최*석	경북 경산시 경청로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지상권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류*숙	경북 경산시 경청로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근저당권 자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지상권자	
							김*중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반지길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지상권자	
							박*희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반지길	성암신용협 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청로	지상권자	
기정	47	경산시 증방동	796	전	1,025	1,025	정*숙	경북 경산시 사동				
기정	48	경산시 증방동	732-5	대	515	21	진*혜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근저당권 자	
기정	49	경산시 증방동	732-8	대	188	70	김*섭	경북 경산시 증방동	경산축산업 협동조합	경북 경산시 경안로		
기정	50	경산시 증방동	743-2	구	139	57	국(농림축 산식품부)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변경	50	경산시 중방동	743-7	구	62	62	국(농림축 산식품부)				
기정	51	경산시 중방동	743-5	임	6,422	5,447	서*호	경북 경산시 중방동 509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근저당권 자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지상권자
							서*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지상권자
변경	51	경산시 중방동	743-10	임	5,449	5,449	서*호	경북 경산시 중방동 509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근저당권 자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지상권자
							서*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지상권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52	경산시 증방동	744-2	전	960	960	최*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로				
기정	53	경산시 증방동	745-2	전	234	234	김*석	경북 경산시 삼남동				
기정	54	경산시 증방동	745-4	전	51	51	유*식	경북 경산군 경산읍 증방동				
기정	55	경산시 증방동	758-1	전	1,250	1,250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56	경산시 증방동	758-2	전	288	288	경산시					
기정	57	경산시 증방동	758-3	전	1,107	1,107	경산시					
기정	58	경산시 증방동	759-1	전	327	327	경산시					
기정	59	경산시 증방동	759-2	묘	449	449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면임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기정	60	경산시 증방동	759-3	묘	110	110	장*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기정	61	경산시 증방동	760-1	중	31	31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62	경산시 증방동	760-2	중	15	15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63	경산시 증방동	767-14	전	11	11	정*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기정	64	경산시 증방동	772-2	전	664	664	경산시					
기정	65	경산시 증방동	772-5	구	138	138	국 (농림부)					
기정	66	경산시 증방동	772-6	구	4	4	국 (농림부)					
기정	67	경산시 증방동	773-2	구	115	53						미등 기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68	경산시 증방동	773-3	진	8,177	7,660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변경	68	경산시 증방동	773-12	진	7,549	7,549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69	경산시 증방동	773-4	전	214	214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70	경산시 증방동	773-5	대	38	38	이*분	경북 경산시 원효로				
기정	71	경산시 증방동	775-1	진	1,126	1,126	경산시					
기정	72	경산시 증방동	775-2	임	3,369	3,369	경산시					
기정	73	경산시 증방동	775-3	진	314	314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면임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기정	74	경산시 증방동	775-4	임	813	813	경산시				
기정	75	경산시 증방동	775-5	임	360	360	경산시				
기정	76	경산시 증방동	775-8	수	28	28	경산시				
기정	77	경산시 증방동	775-9	임	24	24	경산시				
기정	78	경산시 증방동	777-1	전	49	49	권*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기정	79	경산시 증방동	777-2	전	50	50	권*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기정	80	경산시 증방동	777-3	수	1,709	1,709	경산시				
기정	81	경산시 증방동	778-3	중	55	55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82	경산시 증방동	779-1	수	50	50	경산시					
기정	83	경산시 증방동	779-2	종	57	57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기정	84	경산시 증방동	779-3	수	107	107	경산시					
기정	85	경산시 증방동	780-1	묘	163	163	경산시					
기정	86	경산시 증방동	780-2	전	399	399	경산시					
기정	87	경산시 증방동	780-3	수	101	101	경산시					
기정	88	경산시 증방동	780-4	수	8	8	경산시					
기정	89	경산시 증방동	782-1	전	779	779	경산시					
기정	90	경산시 증방동	782-2	묘	800	800	김*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증방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달	경북 경산군 증방동				
							김*달	경북 경산군 증방동				
							김*달	경북 경산군 증방동				
							김*달	경북 경산군 증방동				
							경산시					
기정	91	경산시 증방동	782-3	수		74	경산시					
기정	92	경산시 증방동	783-1	임		531	국 (기획재정 부)					
기정	93	경산시 증방동	783-2	전		637	이*수	경북 경산시 사동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94	경산시 증방동	783-3	수	104	104	국(기획재 정부)					
기정	95	경산시 증방동	783-4	수	212	212	경산시					
기정	96	경산시 증방동	783-5	진	28	28	경산시					
기정	97	경산시 증방동	783-6	수	118	118	경산시					
기정	98	경산시 증방동	784-10	임	2,499	2,499	진*수	경북 경산시 정평동				
							진*호	충남 천안시 신부동				
							진*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경산시					
							장*화	경북 경산시 상방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진*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기정	99	경산시 증방동	784-11	대	198	198	정*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정*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화로				
							정*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부천세무서		압류	
									경기광주 세무서장		압류	
							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기정	100	경산시 증방동	784-12	수	294	294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기정	101	경산시 중방동	784-2	전	932	932	진*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기정	102	경산시 중방동	784-23	전	134	134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화로					
							경산시						
							이*우	경북 경산시 향교길					
							정*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정*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경기광주 세무서장			압류	
							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기정	103	경산시 중방동	784-24	임	232	232	경산시						
기정	104	경산시 중방동	784-25	수	3	3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05	경산시 중방동	784-26	전	44	44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화로				
							경산시					
							이*우	경북 경산시 향교길				
							정*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정*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기정	106	경산시 중방동	784-27	전	4	4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화로				
							경산시					
							이*우	경북 경산시 향교길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정*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정*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기정	107	경산시 중방동	784-28	임	89	89	경산시					
기정	108	경산시 중방동	784-3	전	7,295	7,295	추*석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화로				
							이*우	경북 경산시 향교길				
							정*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기정	109	경산시 증방동	784-4	임	297	297	경산시					
기정	110	경산시 증방동	789-2	전	127	127	경산시					
기정	111	경산시 증방동	791-1	전	92	92	경산시					
기정	112	경산시 증방동	792-1	전	733	733	경산시					
기정	113	경산시 증방동	792-10	전	13	13	경산시					
기정	114	경산시 증방동	792-11	구	22	22	이*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삼남동				
기정	115	경산시 증방동	792-12	전	186	186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16	경산시 증방동	792-2	구	394	394	이*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삼남동				
기정	117	경산시 증방동	792-3	전	1,018	1,018	정*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기정	118	경산시 증방동	792-4	수	633	633	경산시					
기정	119	경산시 증방동	792-6	전	29	29	경산시					
기정	120	경산시 증방동	792-7	구	40	40	이*희	경북 경산군 경산읍 삼남동				
기정	121	경산시 증방동	792-8	전	599	599	경산시					
기정	122	경산시 증방동	792-9	수	7	7	경산시					
기정	123	경산시 증방동	793-1	전	977	977	경산시					
기정	124	경산시 증방동	793-2	구	140	140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25	경산시 증방동	793-3	도	34	34	경산시					
기정	126	경산시 증방동	793-4	수	39	39	경산시					
기정	127	경산시 증방동	793-5	수	12	12	경산시					
기정	128	경산시 증방동	794-1	수	36	36	경산시					
기정	129	경산시 증방동	795-1	묘	165	165	박*수	경북 경산군 경산읍 증방동				
기정	130	경산시 증방동	797-1	수	63	63	경산시					
기정	131	경산시 증방동	797-2	전	577	577	양*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기정	132	경산시 증방동	797-3	수	213	213	경산시					
기정	133	경산시 증방동	798-1	전	215	215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34	경산시 증방동	799-1	전	426	426	태*철	경북 경산시 향교길				
기정	135	경산시 증방동	799-3	수	73	73	경산시					
기정	136	경산시 증방동	802-72	도	638	423	국(국토 교통부)					
변경	136	경산시 증방동	802-72	도	422	422	국(국토 교통부)					
기정	137	경산시 증방동	802-77	도	1,727	1	국(국토 교통부)					
변경	137	경산시 증방동	802-77	도	1,655	1	국(국토 교통부)					
기정	138	경산시 증방동	811-3	구	220	109	국(농림 축산식품부)					
신규	139	경산시 삼북동	4-2	전	226	226	경산시					
신규	140	경산시 삼북동	1-7	전	84	84	경산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면임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신규	141	경산시 삼북동	1-8	전	1	1	경산시					
신규	142	경산시 삼북동	1-9	전	212	212	경산시					
신규	143	경산시 삼북동	11-4	전	84	30	경산시					
신규	144	경산시 삼북동	12-10	전	130	130	경산시					
신규	145	경산시 삼북동	12-11	임	412	412	경산시					
신규	146	경산시 삼북동	12-12	구	13	13	경산시					
신규	146	경산시 삼북동	12-13	임	10	10	경산시					
신규	147	경산시 삼북동	13-4	전	448	448	경산시					
							한*분	경북 경산군 경산읍 서상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신규	148	경산시 삼북동	20-6	답	39	39	경산시					
신규	149	경산시 삼북동	5-3	묘	21	21	경산시					
신규	150	경산시 삼북동	5-4	진	73	73	경산시					
			이하 여백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